



위원별 분장업무 의견 교환 법제위원회, 과대광고·영리법인 등 논의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지난 10월 8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7월 법제·윤리·치과의사전문 의제도시행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법제위원별로 분장된 업무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안성모 법제담당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과계 현안 중 법제관련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회원들의 관심도 높다”면서 “위원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동훈 법제이사는 청와대 의발특위 의료정책전문위원회에서 집중 검토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에 대한 그간의 경과사항을 보고하고, 이어 각 위원들에게 분장된 업무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먼저 과대광고 방지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기준 제정과 관

련해서는 현재 논의중인 의료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변경 등이 정해지는대로 의료광고 관련 지침이 담긴 책자를 발간, 회원들에게 배포하지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 내년 4월부터 허용되는 경력광고에서 의료인의 수련병원 기재 허용으로 인한 전문의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상의 주의 의무(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하여는 각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지는 안이 많았으며 영리법인 설립문제와 대해서는 영리법인의 장단점에 대해 연구,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거제도 개선, 치과계에 불합리한 의료관련 법률 정비에 관한 사항, 치의신보 법률갈럼(치과의료민원사안, 법적인 질의·회신 등) 게재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국회통과 전망 이재정 의원 후원 행사서 통과 노력 밝혀

전남, 전북, 경북, 부산 등 국립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의 초석이 되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이 국회교육위원회의 본격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교육위원회 이재정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한 정재규 협회장과 만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던 설치법이 11개월만에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게 됐다.

그 동안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일정과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발의만 된 채 논의가 지연돼 왔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국회교육위원회는 오는 21, 22, 24일 교육위원회 예산안을 심의하고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국회는 대통령선거 관계로 일정이 30일 단축돼 11월

9일 폐회하게 되며 치과 병원설치법이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폐회일인 9일 법안 통과가 확정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와 서울대병원 쪽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이의가 없고 국회교육위원회 의원 중에도 반대자가 없는 만큼, 국회본회의 통과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과 치협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치과병원 병원장이 일개 진료부 진료부장으로 돼 있고 의대병원에 예측돼 인사권과 예산권한 마저도 없어 치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치과의사의 자존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이 통과되면 이 법안을 토대로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국립치대들도 독립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 의대병원으로부터 예측의 굴레를 벗게하는 신호탄 역할을 할 전망이다.